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(만화대여업)금지 처분 취소 청구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 원 명	서울고등법원
사건번호	2018누○○○○○ [2심]	사건유형	자격면허인가등록
원 고	□□□	피 고	인천광역시○○교육지원청교육장
판결선고일	[2심]2019. 5. 14. 항소기각	비 고	[1심]2018. 10. 25. 원고패소
사건개요	❍ 원고는 2017. 9. 1. 인천 ■■구 ■■대로 000 지하2층, 지상 7층 건물 중 4층 225.4㎡ 부분에 A상호의 도서대여 서비스업, 음식점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, 만화대여업을 위한 시설(이하 '이 사건 시설'이라 한다)을 설치하였다. 이 사건 시설은 B중학교의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47m,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28m 떨어진 곳으로 B중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. ❍ 원고는 2017. 9. 13. 피고에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신청(이하 '이 사건 신청'이라 한다)하였다. ❍ 피고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. 9. 27.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이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 등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을 하였다.		
주 문	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 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		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	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7. 9. 27.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		
판결이유	❍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- 또한 원고가 당심에서 언급하고 있는 만화대여업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유사 사례(갑 제8호증)의 경우 이 사건 시설과는 위치, 구조, 영업기간 등의 면에서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. ❍ **(1심 판결요지)**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,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. -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보건·위생, 안전, 학습과 교육환경 등을 보호하려는 것인데, 이 사건 시설은 각 좌석이 높은 칸막이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고 출입연령의 제한이 없어 성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서 이곳에 출입하는 학생들의 보건·위생, 안전 등에 나쁜 영향을 줄 위험성이 있고, B중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서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 등에 나쁜 영향을 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.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이 사건 시설의 종류,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, 이 사건 시설이 금지 시설에서 제외될 경우에 주변의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심의하여		

	이 사건 시설을 금지 시설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 -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학생의 보건·위생, 안전, 학습과 교육환경 등의 보호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. - 초등학생과 중·고등학생은 만화대여업 시설 접근성에 대한 통제의 정도 등이 서로 다르고, 이에 따라 학생의 보건·위생, 안전, 학습과 교육환경 등에 나쁜 영향을 받게 될 위험성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서 적절한 비교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, 피고가 관내에 있는 C초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만화대여업 시설을 금지 시설에서 제외하면서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내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.
결론	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